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1. 관련

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3.26)

ㄴ. 2018아10877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18.3.30.) '일양약품'

2. 위에 따라 2018. 3.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파일의 기존(변경전) 상한금액 유지

집행정지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일양약품 주식회사	붙임 참조	2018. 4. 20.

· 붙임 : 집행정지 대상 품목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방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조달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 대한조산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주무관 박정수 보건사무관 전결 2018. 3. 30. 황영원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1960 (2018. 3. 3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54 팩스번호 044-202-3935 / clinique111@korea.kr / 대국민 공개